



교 육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

1. 관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8978(2022.2.28.)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불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< 주요 변경사항 >

가. (격리면제서 발급기준 확대) 중요한 사업상 목적, 학술·공익적 목적 발급기준 완화

변경 전	변경 후
○ 중요사업상 목적 - 기업대표자 및 대표자의위임을 받은자 - 계약 및 약정 체결(증빙 必) - 그 외 계약약정에 준하는 협상(증빙 必)	○ 중요사업상 목적 -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- 계약 및 약정 체결(증빙 必) - 설비 구축, 현장 기술이전 등(증빙 必) -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
○ 학술·공익적 목적 -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-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	○ 학술·공익적 목적 -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-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-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-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

※ 2022. 3. 1.(화) 심사건부터 적용

나. (신속항원검사 중단)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후 3일차, 입국 후 5일차 신속항원 검사 중단('22.3.1.~)

※ '22.3.1.(화) 이전 입국자 소급 적용 / (예시) 2.27.(일) 입국한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3일차 신속항원검사 미적용

다. (시행일) '22. 3. 1.(화)

*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영문 서식 추후 통보 예정

- 불임 1.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
2.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1부. 끝.

교 육 부 장 관



수신자 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강진아

행정사무관

김은미

학생건강정책과장

전결 2022. 3. 11.

정희권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2096

(2022. 3. 11.)

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동)

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962

팩스번호 044-203-6438

/ jinariver@korea.kr

/ 대국민 공개